

# 정 관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관리자협회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관리자협회 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및 전국 광역 자치단체(제주 특별자치 도, 세종 특별자치 시)에 한국 소방 안전관리자 협회의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2장 목적 및 사업

### 제3조 [목적]

본회는 소방 안전 관리자에 대한 기술적· 법률적· 행정적 지원으로 권익을 보호 하고 소방관련 현장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며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 부터 국가의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1.소방 안전관리자의 권익 보호 사업.
- 2.소방 안전 관리자의 선임관련 법률적· 행정적 절차 지원.
- 3.소방 안전 관리자의 기술적· 법률적· 행정적. 문제 발생 시 질의 답변, 관련 해결에 본회 자문 위원회 도움.
- 4.소방 안전관리자의 구인 및 구직 활성화.
- 5.소방 안전 관련 자격증취득 및 학위취득 장려 및 지원.
- 6.소방 안전 관련 현장실무 교육.
- 7.MOU를 통한 회원들의 실질적인 혜택제공.
- 8.우수 소방 안전관리자 표창 및 포상 상신.
- 9.지역별 소방 안전관리자 커뮤니티 구성.
- 10.소방 안전관리 소식지 혹은 회지의 발행.
- 11.국내 및 해외 소방 안전 단체와의 교류 증진.
- 12.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일반 회원, 정 회원, 특별 회원으로 구성 한다.

1. 일반회원 : 본회에 회원 가입 신청을 한 자.
2. 정회원 : 본회에 회원 가입 신청을 한 자로서 연 회비를 납부한 자.
3. 특별회원 : 본회 회원 혹은 본회의 제3조 목적 달성을 위한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가입한 자로서 특별 회원 연 회비를 납부한 자.

###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일반회  
원 및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별표 4  
에서 규정한 다음의 소방 안전관리자로 한다.
  1. 특급 소방 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2. 1급 소방 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3. 2급 소방 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4. 3급 소방 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 ② 제①항의 소방 안전 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대학 등에서 소방 관련학과 강의  
를 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③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제①항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
- ④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⑤ 공동주택 시설물과 일반건축 시설물 또는 회사, 공장등에 제①항의 소방  
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⑥ 건축공사 현장과 건설공사 현장 등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⑦ 소방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선임  
을 희망하는 자.
- ⑧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재직을 희망하는 자

### 제7조 [입회]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본회 홈페이지  
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제6조 1항부터 8항에 해당하는 자중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고, 특별 회원으로 가입 하고자 하  
는 자는 특별 회원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일반 회원, 정회원 및 특별회원

은 본회 홈페이지 회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 한다.

#### 제8조 [회비]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회비는 이사회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일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사업 참가.
  2. 본회가 발간하는 소식지·회지 등 무료 구독 및 열람.
  3. 본회에서 주관하는 무료 교육(U튜브 소방안전 방송강의) 수강.
  4.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부과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5. 본회의 정관 및 결의 사항 준수.
  6.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정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사회에서 정한 연 회비를 이사회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2. 정회원 입회와 동시에 본회의 대의원이나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얻는다.
  3.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4. 정회원은 본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정회원은 본회 자문 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상담 등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 본회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회 유명 인사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연수·교육 등에 참여 할 수 있다.
  7. 본회가 주관하는 소방 안전 단체와의 교류 및 선진 외국의 우수 소방 안전 업체의 견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8. 제①항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9. 정 회원 회원증을 교부 받는다 (정 회원증은 본회에서 발급)
  10. 구인/구직 알선을 받는다.
  11.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 ③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사회에서 정한 특별 회비를 이사회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2. 제①항 1호,2호,4호,5호 제②항 4호,5호,6호,7호,10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본회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와 홍보를 할 수 있다.
4. 특별 회원 회원증을 교부 받는다 (특별회원증은 본회에서 발급).
5.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 제10조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정지]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 한다.
  1. 본인 희망으로 탈퇴 시. 단, 탈퇴 후 재 입회를 요하는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본인의 사망.
  3. 본회 이사회에서 제명 의결이 있는 경우. 단, 제명 의결 전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1회 부여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탈퇴 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서는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 ③ 정 회원이 이사회에서 정한 납부기한 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포함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회원이 연체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정지된 회원자격은 연체된 회비를 납부한 익일부터 회복된다. 단, 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연체하는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1조 [회원의 상벌 및 제명]

-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윤리위원회의 운영세칙에 따른 회의결과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훼손시킨 때와 본회 명예를 손상 시킬 때에는 선거윤리위원회의 운영세칙에 따른 회의결과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제4장 임원과 대의원 및 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

#### 제12조 [임원 및 대의원의 구성]

-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 및 대의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이상 5인 이내
  3. 이사 : 3인 이상 7인 이내
  4. 감사 : 2인
  5. 대의원 : 30인 이상 60인 이내

### 제13조 [임원의 선출 및 대의원의 선출]

-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 ②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대의원은 운영위원회 심사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총회에서 승인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 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 만료 다음날로 한다.
- ③ 임기의 기산(起算)은 정기총회일 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임원의 궐위로 선임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 등기갱신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에 개최 되는 총회에서 승인된 임기 연장 안 으로 같음 한다.

### 제15조 [임원의 궐위 유고시]

- ① 회장의 궐위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 및 부회장의 동시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 하며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 ③ 이사의 궐위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의결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 ④ 감사의 궐위나 유고시 2개월 이내에 임시 총회에서 선출 한다.

### 제16조 [임원 및 직원과 대의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 부터 위임된 회무를 담당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나 총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휘 감독 하에 사무처 및 제36조 제⑤항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한다.
- ⑤ 대의원은 본회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며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제26조제②항 과 제③항 안건 등 을 심의 의결한다.
-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하며, 이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1. 재산 상황 및 업무감사

2. 이사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
4. 제2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한다.

제17조[임원 및 직원과 대의원의 해임 및 직무 정지] 임원이나 직원,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무를 정지 하게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직원 및 대의원 의 분쟁 및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한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장기간(1년 이상) 사전 통보 없이 각종 회의에 불참한 경우.
5. 직원의 경우에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한 경우.

제18조[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9조[의결권의 제척] 임원, 이사, 대의원 및 각 위원회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정해진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다만, 연체된 회비를 납부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각 회의 성원 및 의결 정족수] 본회의 각 회의 성원 및 의결 정족수는 제26조 제1항 2호 8호의 본회 해산 및 정관 개정을 제외하고 재적 정 회원 과반수의 이상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 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1조 [명예 회장 및 고문·자문위원 위촉]

- ① 본회의 원활한 집행과 발전을 위하여 사회 각계에서 덕망과 신임이 두텁고 각 분야에 뛰어난 분들을 명예 회장. 고문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명예 회장 및 고문은 각 10인 이내로 하며 자문 위원은 인원 정수가 없다.
- ③ 명예 회장 및 고문· 자문 위원은 이사 2명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단, 고문은 본회 회원이어야 하며 명예 회장 자문 위원은 본회 입회 여부와 무관 하다.
- ④ 명예 회장 및 고문· 자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 연임할 수 있다.

## 제5장 총 회

제2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본회 정 회원(운영 위원회 의결로 총회 개최 10일 전에 확정된 정회원 기준)으로 구성한다.

제23조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 ②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할 수 있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사전에 등록된 전자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정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이사. 회장. 부회장. 감사) 및 대의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제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참석하여 참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결).

3. 사업 계획의 승인.
  4. 예산 결산의 승인.
  5.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6. 잔여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본회의 존립 또는 폐지에 관련된 중대 사항(제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참석하여 참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9.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제1항 제2호 및 제8호 외에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25조 [총회 소집 등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생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3.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4. 제16조 ⑥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5. 재적 정회원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6. 회장 또는 부회장 및 감사의 유고나 궐위의 경우.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임시총회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상 총회 소집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때 에는 재적 이사 과반 수 이상 또는 재적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④ 회장은 총회를 소집 하였으나 총회가 2회 무산(제20조 의결정족수 미달)될 경우 지체 없이 2주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 총회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총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의결 결과는 회장이 우편 또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 밴드 문자 등으로 전체 정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 [대의원회]

- ① 본회는 제24조의 제①항 제8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은 제24조의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총

회를 대신하여 결의 할 수 있다.

③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제25조 4항의 총회를 소집 하였으나 총회가 2회 성원 미달로 무산 될 경우에는 총회 안건중 제24조제1항 8호를 제외한 안건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2. 제③항 제1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대의원회 회장은 대의원회 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3. 기타 사항

④ 제12조 제①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는 30인 이상 6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 회장은 총회의 선출직 대의원중에 제36조 제⑤항 제3호의 선거관리 위원회의 감독 하에 경선을 실시하고 다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 한다. 단 회장이 궐위나 유고시에는 대의원중 최연장자가 임시 의장이 되어 경선을 실시하여 대의원회 회장을 선출한다.

⑤ 당연직 대의원은 본회 사무총장 과 각 지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⑥ 선출직 대의원은 정 회원 이 다른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추천서와 신청서를 사무처에 제출하고, 운영 위원회의 심사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 한다. 단 본회 창립총회 에서는 본회 정관 부칙 제2조의 발기인과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 한다.

⑦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달로 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⑧ 대의원회는 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대의원의 선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27조 [대의원회 결의방법]

① 대의원회의 결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② 대의원은 서면(인감증명 첨부) 이나 대리인(위임장 지참)으로 결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장 이사회 및 회장단회의

#### 제28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제29조 [이사회 소집]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⑥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회의 의결로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소집일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31조 [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
2. 회장단 회의에서 건의한 의안.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상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 사항.
6. 사무처 직원의 업무와 임금 책정 등에 관한 사항.
7. 회비의 결정 기타 부담금 징수 사항.
8. 사업계획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예산안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10. 회지 및 서지의 발간 사항
11. 총회의 위임이 있는 사항.
12. 본회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
13. 제12조 제①항 제4호와 제6호의 이사와 대의원의 정수 조정에 관한 사항.
14.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요청한 안건에 관한 사항.
1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보고한 안건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라 회장이 이사회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업무의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2조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한 의결 및 운영 위원회에 위임 등]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사전에 등록된 전자메일 또는 휴대전화·문자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결하거나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 같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한 의결 또는 운영 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3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본회의 통상적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의 집행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4조 [이사회 의사록 작성]

- ① 회장은 이사회 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 회무 기록 등을 위해 사무처 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 제35조 [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는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도, 자치단체(제주 특별자치 도, 세종 특별자치 시) 의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 ①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지회장 2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즉시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③ 회장단 회의는 본회와 지회의 업무를 협의하고 본회와 지회의 현안을 토의하며 본회 회장은 지회 회장들이 건의한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게 할 수 있다.

### 제7장 위원회와 사무처 및 당회 지역 지회

#### 제36조 [위원회]

- ① 회장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협회의 상무를 논의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본회 운영계획 수립과 사업방향 설정 등 본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 하며 의결 후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 해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무총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정 회원 중 회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회장은 운영 위원회 이외의 위

- 원회 위원장을 간사로 임명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③운영 위원회는 협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 한다.
- ④회장은 운영 위원회 이외에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와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술 위원회.
  2. 법률 위원회.
  3. 선거 및 윤리 위원회.
  4. 교육 위원회.
  5. 대외협력 위원회.
  6.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위원회(비 상설).
- ⑤운영 위원회와 제④항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및 이사회에서 정한 업무를 시행하며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1. 기술 위원회
    - 가. 기술자료 수집, 정리.
    - 나. 정 회원의 기술적 질의응답.
  2. 법률 위원회
    - 가. 연1회 소방 안전관리 관련 법률 정리, 제안.
    - 나. 정회원의 법률적 질의응답.
  3. 선거 및 윤리위원회
    - 가. 선거 제도정립 및 운영.
    - 나. 포상제도 정립 및 운영.
    - 다. 상벌 제도정립 및 운영.
  4. 교육 위원 회
    - 가. 개정법등 교육자료 수집, 정리.
    - 나. 정 회원의 학습적 질의응답.
  5. 대외협력 위원회
    - 가. 타 소방 관련 기관과의 협약.
    - 나. 타 소방 관련 업체와의 협약.
    - 다. 본회의 홍보 방안 논의.
- ⑦운영 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 ⑧각 위원의 선발은 정 회원 중에서 각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 한다.
- ⑨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운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⑩ 각 위원회 위원장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37조 [사무처]

-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제③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사무처의 직원을 지휘 감독 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 한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사무국장,재무국장,기획국장,홍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회장이 임명 하며 사무총장 외의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는 다음 업무를 수행 한다.
  - 1.회원의 가입 및 회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3.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4.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 5.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 6.예산 집행 및 경리 회계에 관한 사항.
  - 7.조직 운영 및 일반 사무에 관한 사항.
  - 8.회장이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④ 사무처의 설치 운영 및 직원 임금에 관하여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사무처의 업무는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 하고 집행 결과는 운영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38조 [한국소방안전관리자 협회 시도 등 지역지회 구성]

- ① 한국 소방 안전관리자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및 전국 광역 지방자치 단체 (제주 특별자치도, 세종 특별자치 시) 에 한국 소방 안전관리자 협회의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회를 설립할 경우 본회에 사전에 보고 하여 승인을 받고 본회의 지휘 감독 하에 지회를 설립하고 지회는 본회와 동일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각 지회의 회장은 본 회 회장단 회의 구성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④ 각 지회의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⑤ 본 회가 소재한 지역의 지회는 본 회가 직접 관장 할 수 있다.
- ⑥ 정관 제9조 2항 9호와 3항 3호의 회원증 발급은 본회에서만 발급한다.
- ⑦ 정관 제9조 2항9호 와 3항 3호의 회원증 발급과 본회 전체회원의 확인

을 위하여 본회와 각 지회는 연1회 상호간 현재 회원 현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⑧ 지회는 본회 운영을 위한 업무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⑨ 본회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 회원이 납부한 협회 비 에서 지회의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 제8장 재산과 회계

### 제39조 [재산의 종류]

-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 재산과 기본 재산 이외의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 1.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 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 제40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총당 한다.

- 1. 정회원 회비 및 부담금.
- 2. 기부금 및 찬조금.
- 3. 사업 수익금.
- 4. U튜브 방송 광고 수입금.
- 5.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 부담금.
- 6. 기타 그 밖의 수입금.

### 제41조 [경비지출]

본회의 경비는 기본 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회비 기부 찬조금 및 용역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총당한다.

### 제42조 [회계]

- ①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② 회계는 공익 법인 회계 기준에 준거하여 실시한다.
- ③ 예산 결산 등의 세부 항목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회계 규정에 의한다.
- ④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특별히 독립회계로 할 수

있다.

#### 제43조 [예산편성 및 결산]

- ① 회장은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장은 회계 연도 개시일 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 ④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과 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4조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본회는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 관청인 소방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 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 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입 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 연도 말의 재산목록 1부.

#### 제45조 [예산집행]

예산 및 사업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 제46조 [특별회계]

- ① 본회는 수익 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특별회계를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특별 회계는 제43조①항의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7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 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 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시킨다.

#### 제48조 [재원의 공개]

본회는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기부금 후원금 모집액 과 정부 지원금 등의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 한다.

#### 제49조 [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9장. 해산 및 기타 준용규정

### 제50조 [해산]

- ①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주무관청인 소방청장에게 신고하여 해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본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 청장의 허가취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다.

### 제51조 [해산 절차]

본회가 해산할 경우 민법의 관련 규정 및 행정안전부 또는 소방청 소관의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제52조 [기타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공익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본 회의 설립 등기일로 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정회원 및 대의원의 특례]

본회 창립총회 전에 발기인 대회에 참여한 발기인 전원은 정회원 회비(잠정 책정한 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정회원과 대의원이 된다.